

# 건물 소유주 인증(첨부 A) 기기 업그레이드 프로그램



**NYSERDA**  
New York State Energy Research  
and Development Authority

\_\_\_\_\_ 본인("건물 소유주")(근무지:  
\_\_\_\_\_)은 이에 따라 다음(이하 "본 증명서")을 증명하고 이에 동의합니다.

1. 본인은 \_\_\_\_\_에 위치한 부동산  
("본 거주 유닛")의 소유주입니다;
2. 본인은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("NYSERDA")이 뉴욕의 가정에 기기 업그레이드 프로그램("본 프로그램")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. 본 프로그램은 특정 가가의 구매, 설치 및 필요한 전기 작업에 대한 리베이트를 제공합니다. 본인은 또한 저소득층(LMI) 가가가 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며, 특히 주 전역의 취약 계층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인정합니다.
3. 본인은 본 거주 유닛의 세입자가 본 프로그램에 따라 NYSERDA가 제공하는 리베이트를 신청하고 있음을 인정합니다.
4. 본인은 주거용 건물에 대한 본 프로그램의 리베이트를 받은 후 최소 2년 동안 저소득층 세입자에게 본 거주 유닛을 임대하는 데 동의합니다.
5. 본인은 본 프로그램에 따라 개선된 사항을 근거로 더 높은 임대료를 받기 위해 세입자를 퇴거시키지 않겠다는 데 동의합니다.
6. 본인은 본 프로그램에 따라 에너지 개선을 한 결과로 건물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는 데 동의합니다. 단, 재산세 및/또는 특정 운영비 및 유지보수 비용의 실제 증가분을 보상하기 위한 인상은 예외로 합니다.
7. 본인은 본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리베이트를 수령한 후 2년 이내에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, 이 진술서의 1-6항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적용되며 매매 계약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합니다.
8. 본인은 프로그램에 따른 세입자의 권리를 설명하는 서면 통지를 세입자에게 제공하기로 동의합니다.
9. 본인은 본 확인서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, 프로그램에 따라 받은 리베이트 금액을 NYSERDA에 환불해야 하며, 세입자가 회수할 수 있는 벌금, 손해배상금, 변호사 수임료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추가적인 벌금 및 집행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.

확인 및 동의,

\_\_\_\_\_ 건물 소유주 서명

\_\_\_\_\_ 날짜

\_\_\_\_\_ 건물 소유주 성명

\_\_\_\_\_ 건물 소유주 직위

검토자: \_\_\_\_\_

기존 기기 사진: (다음 중 한 가지 선택)

☐ 신청인 또는 추가 연락처에 이메일 발송 ☐ NYSERDA가 사진을 찍어야 함

지원자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가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. (다음 중 한 가지 선택)

☐ 중간 소득 리베이트 대상 ☐ 저소득 리베이트 대상 ☐ 리베이트 대상 아님

신청서 및 관련 서류가 Salesforce에 업로드된 날짜: \_\_\_\_\_

Salesforce에 입력된 신청서 날짜: \_\_\_\_\_

추가 설명:

기기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담당자 서명

직위

날짜